탄 원 서

사 건	2026고합559 증거인멸
피 고 인	양호열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수행업무 담당)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재판부 귀중
탄원 취지	공소사실의 엄격한 심리에 따른 무죄 선고 요청 / 예비적 선처 탄원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저는 이 사건의 당사자도 증인도 아니며, 공소장 전문과 전체 공판기록을 열람한 사람도 아닌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양호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인식에 상응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범죄라도 덮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의 의도와 이를 수행한 사람의 인식 및 책임을 끝까지 나누어 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1. 중대한 사건일수록 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5일 무렵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문서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문서나 전자기기가 형사사건의 증거였다면 그 훼손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려면 실제 행위와 대상, 당시의 인식, 범행의 고의가 피고인 자신에 관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께서는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다른 인물의 지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양호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이 맡았던 수행·보좌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 지시를 받을 때 어떤 설명과 상황을 접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구별을 부탁드립니다.

2. 시민이 바라는 것은 일방적인 면죄가 아니라 정확한 재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삶의 중대한 갈림길이 됩니다. 저는 언론보도만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미리 결정하는 일을 경계합니다. 반대로 확인된 불리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재판부께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같은 엄격함으로 살펴주시고,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을 온전히 적용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3. 증거인멸죄의 요건과 피고인의 당시 인식을 구별하여 심리해 주십시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자료가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가라는 객관적인 판단과,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당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라는 주관적인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피고인이 파손하거나 폐기한 물품이 사후적으로 중요한 증거였다는 점은 그것대로 무겁게 평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해당 물품의 내용이나 용도를 알았는지, 수사와 관련한 의미를 인식하였는지, 증거의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결과를 인식·용인하였는지는 그의 발언과 행동, 지시 내용 및 당시 주변 정황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죄명이나 증거의 모든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펴달라는 요청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은 이처럼 논란이 큰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이 법원칙을 결론을 미리 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입증의 빈틈이 추측으로 보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중히 호소합니다.

4. 문서·노트북·휴대전화 각각의 사정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 주십시오

문서 세절, 노트북 파손, 휴대전화 파손 또는 교체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물품의 내용과 사용 목적, 파기 지시를 받은 순서와 방식, 피고인에게 전달된 설명, 피고인이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문서를 통상적인 업무정리 자료로 이해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상 중요 자료로 이해했는지, 전자기기의 파손을 요청받았을 때 어떠한 이유로 받아들였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파손된 형태나 분량만으로 고의를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정황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수적 정황과 직접 진술, 그 진술의 전후 일관성을 함께 살펴 각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정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피고인의 설명이 일부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점 역시 엄정히 판단하시되, 설명이 충분히 검토되기도 전에 보좌 업무를 담당했다는 위치만으로 목적까지 공유했다고 추단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5. 관련 사건의 불리한 판단도 존중하되, 본인의 재판에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2026년 5월 19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별도 증거인멸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공개 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부가 자료의 증거성과 폐기 지시의 의미를 중대하게 보았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의 탄원은 이러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그 법원 판단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의 고의와 책임을 심리한 것과, 이 사건에서 지시를 받은 양호열 피고인 자신의 인식과 책임을 확정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앞선 판결에서 다뤄진 사실과 증거는 이 재판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되겠지만, 그 결론만으로 양호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의 내용을 어느 시점부터 알았는지, 지시받은 물품의 실질적 용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당시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정황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관련 재판이 이미 한 차례 판단했다는 사정 때문에 피고인 자신의 소명 기회가 상대적으로 좁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6. 지시·수행 관계가 면책은 아니더라도,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거나 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당연히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그러므로 저는 "상급자가 시켰으니 무죄"라는 주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가 목적을 정하고 지시를 내렸는지, 피고인에게 어떤 권한과 정보가 주어져 있었는지, 그 지시의 위법성을 인식할 현실적인 여건과 판단할 시간이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피고인의 인식과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관계에서 장기간 수행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알려진 만큼, 그가 의사결정의 주체였는지 아니면 제한된 정보 안에서 실무를 처리한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살펴주십시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고의가 인정된다면 그가 실제로 맡은 역할과 선택 가능성에 상응하는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7. 유죄로 판단하시더라도, 개인별 책임에 맞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재판부께서 모든 증거를 심리한 끝에 유죄를 인정하신다면, 탄원인은 그 판단을 전제로 하여 다시 한번 선처를 간청드립니다. 지시를 계획하고 결정한 사람과 실무를 수행한 사람이 언제나 같은 정도의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목적의 형성에 참여하였는지, 구체적인 파기 범위를 스스로 정하였는지, 지시를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얼마나 이해하였는지를 실제 확인된 사실에 따라 헤아려 주십시오.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다만 형의 선택과 정도는 피고인에게 입증된 행위의 범위와 주관적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작할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진다면, 재판부께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가족의 생계, 건강 상태, 봉사활동, 반성의 정도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내세워 선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기록과 신뢰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판단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것이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시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직이라고 믿습니다.

8. 한 시민으로서 재판부께 드리는 간절한 부탁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사람의 이름이 사회적으로 큰 사건과 연결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사건 전체의 무게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짊어져서는 안 되며, 반대로 실제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빠짐없이 판단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엄격한 균형이 이 사건에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호열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증명과 개별적 책임의 원칙이 이 피고인에게도 온전히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록에 따른 판단과 피고인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결 어

이상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양호열 피고인의 증거인멸죄 성립요건과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신중하게 살펴주시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만일 유죄로 판단하시는 경우에도, 피고인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제로 증명된 정상사유에 맞추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재판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탄 원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주 소 : _____

연 락 처 : _____ 생년월일: _____